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998. 7.22
교육사회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1998년 7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나. 회부일자 : 1998년 7월 14일

다. 상정일자 : 1998년 7월 22일

(제150회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요지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가. 제안이유

충청북도괴산교육청과 충청북도음성교육청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학생야영장 2개소중 시설이 노후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실적이 부진하며, 운영면에서도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야영장을 폐지하여 교육청당 1개소의 야영장만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을 통해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학생야영 수련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괴산학생야영장”과 “음성학생야영장”을 폐지 (안 별표1)
- “음성학생야영장조촌분원”을 “음성학생야영장”으로 함 (안 별표1)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시설이 노후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실적이 부진한 야영장을 폐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연초에 폐지하지 않고 현재까지 지연된 사유와 폐지되는 야영장의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학생 야영수련의 전반적인 내실화 방안,

야영장 명칭을 시군 명칭과 동일하게 (청천 ⇒ 괴산으로, 중원 ⇒ 충주로) 통일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임

4. 질의및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가.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